



## 계절 근로자

### 코로나 19 테스트와 치료

무비자 상태이거나 비자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중 보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. 만약 신체 상태가 좋지 않다면, 의사의 진찰을 받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세요.

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가 코로나 19 테스트와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[호주의 수도](#)
- [뉴 사우스 웨일즈](#)
- [노던 테리토리](#)
- [퀸즐랜드](#)
- [남 호주](#)
- [타스마니아](#)
- [빅토리아](#)
- [서 호주](#)

###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, 혹은 부분적인 태평양 근로제(Pacific Labour Scheme ) 참여자

#### 태평양 근로제 서브클래스 403 비자 소지자

근로자와 고용주가 외교 및 통상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[태평양 근로제 서브클래스 403 비자](#)를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비자를 취득하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####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서브클래스 403 비자 소지자

비자가 연장되진 않습니다. 그러나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에 대응해서 중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.

다음 경우에는, [임시 활동 \(서브클래스 408 호주 정부 승인 협정 \(AGEE\) 관련\) 비자 \(코로나 19 팬데믹 비자\)](#) 취득이 가능합니다.

- 28 일 이내에 비자가 만료
- 비자는 이미 만료되었지만, 만료 시점이 28 일 이내이다.
- 호주 출국이 불가능함
- 보건, 노인 및 장애인요양원, 아동 보육, 농업, 식품 가공 등 코로나 19 관련 중요 부문 근무자

이 비자를 취득하면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이 신규 비자는 고용주 관련 제도를 포함해서 동일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근로제에도 적용됩니다.

## 다른 고용주와 일하기

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태평양 근로제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변경 허가가 없으면, 보통 스폰서/승인된 고용주 한 명에 한해서만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.

코로나 19 기간 동안에는 스폰서/승인된 고용주 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. 스폰서/승인된 고용주 사이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, 고용주는 다음 연락처로 연락해야 합니다

- 교육, 기술 및 고용부 (계절 근로자의 경우)
- 외교통상부 (태평양 근로제의 경우)

이러한 한시적 제도 하에서 고용주들은 여전히 모든 호주의 관련 직장법을 준수해야 하며, 근로자는 계속해서 다른 모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의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.

## 비자 조건 8503 (추가 체류 불가)

코로나 19 기간 동안, 계절 근로 프로그램 서브클래스 403 비자 소지자는 근로자의 비자 조건인 8503(추가 체류 금지)에서 자동 면제되고 [코로나 19 팬데믹 비자](#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8503 조건의 면제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
## 기존 비자의 체류기간

기존 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.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호주에 있는 경우 비자는 중지됩니다.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호주를 떠날 수 없다면 호주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
고용주와 귀하의 상황을 상의해야 합니다. 교육, 기술 및 고용부는 승인된 고용주와 협력해서, 계절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안전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합니다.

방문 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, [코로나 19 팬데믹 비자](#)의 취득이 가능할 지 모릅니다.

이 경우에는 다른 비자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추가 비자 신청비(VAC)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등의 진술과 증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.

## 검역 요건

모든 비자 소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기 격리를 포함하는 모든 코로나 19 건강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

각 주와 테리토리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검역 및 자기 격리 조건을 통제합니다.

내무부는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조언을 받아 비자 소지자가 공중 보건 및 검역법을 준수하지 않고 허용할 수 없는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비자 취소를 고려합니다.

각 주 및 테리토리 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호주의 수도 (ACT) - <https://www.health.act.gov.au/>
- 뉴 사우스 웨일즈 (NSW) - <https://www.health.nsw.gov.au/Pages/default.aspx>
- 빅토리아 (VIC) - <https://www.dhhs.vic.gov.au/>

- 퀸즐랜드 (QLD) - <https://www.health.qld.gov.au/>
- 서 호주 (WA) - <https://www.health.wa.gov.au/>
- 남 호주 (SA) - <https://www.sahealth.sa.gov.au/>
- 노던 테리토리 (NT) - <https://health.nt.gov.au/>
- 타스마니아 (TAS) - <https://dhhs.tas.gov.au/>

### **비자 소지자가 재정난을 겪는 경우**

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, 가능하면 집으로 귀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9-20 회계연도 동안에 최대 1만 달러의 호주 퇴직 연금을 비과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